

붙임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 경력 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2025. 1. 1. 기준)

구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법인 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div>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유사경력 ⑩에서 이동, '24년)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 사회복지법인의 본사무소, 사무국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법인·시설 회계,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 ※ 위 요건 미충족시 80% 인정 3.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2002~2005.7.31.)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로 확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조건부신고시설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 시설로 전환한 시설</div>

구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유사경력	80%	<p>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p> <p>*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p>
		<p>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p> <p>*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p> <p>※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p> <p>*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p> <p>※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p> <p>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동종직종: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보건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p> </div> <p>※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p> <p>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p> <p>3. 공무원 및 <u>공무직</u>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p> <p>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p> <p>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p> <p>6.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p> <p>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p>

구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p>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경력 2번으로 이동, '24년)</p> <p>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p>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p>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p> <p>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p> <p>※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 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p> <p>1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p> <p>*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 2018년 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p> <p>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p> <p>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 활동지원사 경력의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5.1.1.부터 적용(서울시)</p> <p>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구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p>22.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구 전담인력)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13.12.5)되기 전의 근무경력) * 종전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우, 18.1.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일한 경우 '25.1.1부터 적용(서울시)</p> <p>2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2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p> <p>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26.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p> <p>27.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 으로 명시된 근무경력</p> <p>28.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table border="1" data-bbox="430 1220 1340 1512"> <thead> <tr> <th>연도</th> <th>사업명</th> <th>직종</th> </tr> </thead> <tbody> <tr> <td>2007</td> <td>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td> <td>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td> </tr> <tr> <td>2008</td> <td>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td> <td>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td> </tr> <tr> <td>2009~2011</td> <td>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td> <td>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td> </tr> <tr> <td>2012</td> <td>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td> <td>독거노인돌보미</td> </tr> <tr> <td>2013</td> <td>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td> <td>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td> </tr> <tr> <td>2014~2019</td> <td>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td> <td>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td> </tr> <tr> <td>2020~</td> <td>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td> <td>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td> </tr> </tbody> </table> <p>29.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p> <p>30. 「발달장애인*관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1. 「발달장애인 관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2.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구분	인정 바울	인정대상경력
		<p>3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p> <p>3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p> <p>36. 「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7.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8.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3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40.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㉑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p> <p>4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㉒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p> <p>4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㉓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은 근무 구간별 범위까지 경력인정('24년 6월말, 7월말, 10월말일까지 3구간)</p> <p>4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상담기관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45.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구분	인정 비율	인정대상경력
		<p>4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p> <p>47. 복지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실·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㉔은 종전 근무경력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근무경력 인정은 ㉓번 근무구간 범위와 동일 적용</p> <p>48. 복지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㉔은 종전 근무경력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p>
유의 사항		<p>1. 이 외에 사회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p> <p>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 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p> <p>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p> <p>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47"는 2018년부터, "48"는 2024년부터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p> <p>5. 종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1부터 적용'의 의미 '△△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된다는 의미로, 과거의 급여를 소급하지 않음</p> <p>6.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p>

붙임6

서울시 처우개선 적용 사회복지시설 유형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관 ○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지역보조기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외국인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소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 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 일시지원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